

제 19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집 회 기 간	1992. 9. 29 (1일간)					
의 결 일 시	1992. 9. 29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 끝 1992 년 9 월 29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 상 유 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출장"을 출석및 여행 (이하 "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별표 3" 을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		정		(안)					
(별 표 1)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제7조 제1항 관련)									
지 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 료(1 야당)	
의 장 부의장	1	2 등	정액	정액	갑	5,000	17,000	11,000	800
	등급	정액			을	4,500	15,000	9,500	800
의 원	2	2 등	정액	정액	갑	4,500	14,000	10,500	800
	등급	정액			을	4,000	11,500	9,000	800
비고 : 1. "갑지" 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 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및 여행 거리가 12 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 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9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9. 29 (1일간)				
의 결 일 시	1992. 9. 29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1조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
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중 "13명"을 "15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다른 조례중 "의회사무과"를"의회사무국"
으로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 으로 개정한다.

제 19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 인사 조정에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집 회	1992. 9. 29 (1일간)					
의 결 일 시	1992. 9. 29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채택						
첨 부 : 구미시 인사 조정에관한 건의서 1 부. 끝						
1992 년 9 월 29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 상 유 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龜尾市 人事調整에 關한 建議書

地方化 時代를 맞아 地方議會가 開院된 지도 1年 6個月이 되었습니다.

地方議會의 構成은 바로 地方自治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地方自治를 위해 地方行政에도 革命的 轉換期를 맞이 했음을 모든 公職者는 새삼 認識해야 하겠습니다.

오랜 中央執權的인 傳統을 지닌 우리나라의 行政에 있어서는, 아직도 前近代의 官僚主義 思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舊態依然한 行政을 답습한다면 實로 有感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地方自治의 本質이 住民 스스로의 힘으로 그 地域의 共通된 問題를 스스로 解決해 가려는 努力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많은 分野에서 是正해야 할 일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官治的 行政에 억눌려 있었던 住民들의 欲求가 한꺼번에 議會를 通하여 噴出되고 있으나, 地方議會가 自律權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소수에 불과한 實情입니다.

地方自治의 歷史가 日淺하기에 自治 實現에 많은 障礙 要因이 있음은 누구나가 認知하는 바이나,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 하나 거론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改善해 나가는 것이 議會가 해야 할 또 하나의 責任과 義務라 할 것입니다.

지난 9月 7日字로, 市郡 議會의 常任委員會 構成에 따른 機能을 補強하기 위하여 道內 8個 市郡에 事務 職員이 늘어나는 職制가 承認됨에 따라 龜尾市 議會事務課도 事務局으로

格上되고, 事務課長이 事務局長으로 職級이 上向 調整됨과 아울러 專門委員이 2 名이나 增員 되었습니다.

실로 鼓舞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나, 昇進 任用에 대한 人事問題가 크게 擡頭 되는 것도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地方公務員 法 제 6 조를 보면 地方自治 團體의 長이 그 所屬 公務員에 대한 任用權을 가지고 있으나, 同法 제 30 조의 2에서나 시행령 제 27 조의 4에서는 上級自治團體長이나 內務部 長官이 人事 交流에 대한 權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職制가 新設되거나 缺員이 있을때마다 落下傘式 人事가 行해진다는 것을 新聞報道 등을 통해 무수히 보아온 것도 事實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公職者들은 生計費 정도의 낮은 報酬로 살아가고 있는 있으나, 명예를 존중하고 그 명예를 위한 昇進이 最高 目標中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人事가 上級團體의 恣意에 의해 一方的으로 行하여 진다면 市·郡의 地方 公務員들의 士氣는 극도로 떨어지고 따라서 行政의 能率化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고 有能한 公務員이 矜持와 보람을 지니고 一生을 通해 그 地域 社會를 위해 獻身的으로 奉仕할 때에 地方 自治의 發展이 기대되고 아울러 地域 發展이 온다는 것을 우리 議員들은 確信하고 있습니다.

1992년 9월 29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